

천안캠퍼스

코로나19 위기대응 2021-1 천안캠퍼스 학사운영 방안

(2021.02.02, 교무처 교무팀)

1. 공통사항

- 가. 아래 학사운영 방안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코로나19 확산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정부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나. **개강 첫주(3.2.~3.8)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사전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되, 학생의 선제적 수업 체험, 수업 선택권 보장 및 강의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교·강사는 **2.26.(금)까지** 수업내용(개요, 목표, 교재, 수업유형, 과목유형, 성적평가 방법, 주차별 수업계획, 기타 안내사항 등)을 e-Campus에 사전 탑재하여야 함.

2.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 ★ 천안캠퍼스 학부, 정부의 단계별 발표에 따라 즉시 적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융합수업	대면수업 기반 융합수업			원격수업 기반 융합수업	전면 원격수업 전환
대면수업	대면수업				
고사방법	e-Campus활용 권고 대면고사 허용 (고사 방역지침 준수)			e-Campus 활용 원칙 (대면수업 교과목에 한하여 대면고사 허용)	e-Campus 활용 준수
	기말고사 기간 2주간(15~16주차) 확대 시행(교양·교직·일선-15주차/전공-16주차) (단, 모든 보강은 해당 교과목 기말고사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하며, 별도의 고사 없이 과제·결과물 등으로 대체 가능)				
성적평가 방법	상대평가 II 유형 (단, 기존 상대평가 예외 과목은 종전 규정 적용)				-
	융합수업의 경우 대면고사 시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비대면 고사 참여 학생의 성적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비대면 고사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방법 사전 안내 필요)				
보강주간	공·휴일에 따른 일괄(지정) 보강주간 미시행				

주1. 수도권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이한 경우 보다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함.

가. 대면수업 기반 융합수업

- 대면수업(해당 요일/교시에, 해당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기반으로 하되, 대면수업 미참여 학생에게 **①해당 수업의 촬영 영상/관련 콘텐츠를 녹화하여 제공하거나, ②해당 수업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강사 / 학생의 안전 확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및 학생의 수업권 보장 등을 동시에 고려**한 수업방식을 말함.
- 해당 강의실에 강의녹화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의녹화시스템이 설치된 노트북과 웹캠을 대여하여 융합수업을 진행

- 교·강사는, 대면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출결체크 방식(수강진도 확인/상호작용 활용 등) 및 성적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출석점수 반영 최소화 권고).

나. 원격수업 기반 융합수업

- 수강학생은 해당수업의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교·강사는 해당 수업시간, 해당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①해당 수업의 촬영 영상/관련 콘텐츠를 녹화하여 제공하거나, ②해당 수업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수강학생의 경우 대면 수업 참여가 가능.
- 수강생의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원격수업은 **①강의녹화시스템 활용, ②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Cisco Webex) 활용, ③e-Campus에 강의콘텐츠 자체등록 활용** 중 선택하여 원격으로 수업 진행하고, 수업 동영상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출석관리는 원격수업과 동일함.

라. 대면수업

- 수강신청단계에서 대면수업으로 신청한 교과(수강신청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강좌)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학생들에게 사전공지 후 주차별로 융합수업과 혼합하거나 전체과정을 융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함.
-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교·강사는 강의녹화시스템으로 수업내용을 녹화할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참여가 어려운 학생 발생 시 활용을 권고함.
- 융합수업 교과 역시 언제나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수강학생 전원의 동의를 거친 후 교무처에 대면수업 변경 신청원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강의실 수용인원의 1/2 이내로 수강인원을 제한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조편성 등을 통해 강의실 수용인원의 1/3 이내로 대면수업 참여인원을 제한하여 수업을 진행함.

마. 공통사항

- 대면수업 참여 학생 및 교·강사는 각종 방역수칙(손목밴드 착용, 건물 출입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강의실 내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융합수업 참여 학생 중 대면수업 미참여 학생은 **강의 전 스마트출결시스템의 공결신청을 통해 대면수업 미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e-Campus 등을 통해 제공되는 해당 수업내용(온라인콘텐츠 등)을 수강하고, 교·강사가 지정한 출결체크 방식(수강진도/상호작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단,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경우 공결신청 불필요.